

제 66호

행정명령(EXECUTIVE ORDER)

비상 대피소 법령 및 규정의  
일시 정지 및 수정

본인은 뉴욕주의 모든 62개 카운티에 재난 비상을 선포하는 행정명령 제47호를 2012년 10월 26일에 발령하였습니다.

2012년 10월 30일에 대통령은 Bronx, Kings, Nassau, New York, Queens, Richmond 및 Suffolk 카운티에 주요 재난을 선포하였으며, 2012년 11월 2일에 대통령은 Rockland 및 Westchester 카운티에 주요 재난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번 재난의 여파로 노숙자들에게 대피소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가된 시설이 파괴되어 영향을 입은 지역사회의 노숙자들에게 대피소를 제공하기 위한 대체 시설과 숙박소의 사용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본인 ANDREW M. CUOMO 뉴욕 주지사는 주 재해 비상사태 기간동안 어느 기관의 법규, 지방법, 조례, 명령, 규칙 또는 규정의 특정 조항, 또는 그 일부의 준수가 재해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막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행정법 2-B조의 29-a항에 의거 해당 조항을 일시 정지 또는 수정할 수 있는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2012년 10월 26일 발행된 본 행정 명령 제47호에 따라 재난 비상이 선포된 일자로부터 추가 통보시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의 법률들을 상황에 따라 일시 정지 및 수정합니다:

뉴욕주 법전 타이틀 18의 파트 485, 486, 491, 900 및 사회복지법 제7조의 타이틀 I 및 II의 통제 조항, 지역 사회복지 지구가 연방 선언 카운티의 집 없는 남녀 성인 및 어린이들에게 비상 대피소를 제공하는 것을 뉴욕주 임시장애지원실이 승인하고 용이하게 하는 것이 제한받는 한도 내에서.

2012년 11월 8일 Albany

시에서 주 옥새 및 본인의 자필로  
서명합니다.

주지사

주지사 비서